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0
----------	-----

2021. 9. 14.(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전원표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9월 8일

-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전원표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생태관광 활성화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책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2013년 이후부터 지자체별 각 지역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연환경 체험과 다양한 생태관광을 제공함으로써, 희소성 있는 테마관광 콘텐츠의 인지도를 부각시키고 있음. 이에 충청북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생태관광으로 접목시켜 지역주민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은 단지 환경적 보전 가치로의 인식보다는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는 복지차원의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어 주민주도형 생태관광을 통한 자연환경 중요성의 인식 제고는 상당히 중요함.

충청북도의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생태관광으로 접목시켜 지역주민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및 당위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이나,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에 대한 지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및 지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지원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책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는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8.18.~'21. 8.2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 요구하여 반영 “수용” 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 등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생태관광으로 접목시켜 지역주민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원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0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발 의 자 : 전원표,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연철흙, 황규철
이상식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생태관광 활성화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책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라. 조례안 예고 : 2021. 8. 18. ~ 2021. 8. 23.(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관광자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 환경부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의 지정 또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생태관광 자원보전 및 분야별 활성화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기관·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지원계획 수립
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검토 및 육성 지원
3. 시·군 생태관광 컨설팅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생태관광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가. 충청북도의회 의원

나. 도 소속 공무원

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 도지사는 아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1.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지역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 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3. 3. 22.>.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2.>.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생태환경이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자연자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용역비(5년마다)
-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급
-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

3. 관련조문

- 제5조(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 제6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제11조(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12조(수당 및 여비)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2~2026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계획수립 : 외부용역 추진
 - 위원회 운영 : 위원 10명, 연 2회 회의
 - 지원사업
 - 지원건수 : 매년 2개소 신규 지정
 - 지원금액 : 국가 지정 생태관광지역 지원사업* 준용(개소당 약90,000천원)
 - 보조율 : 기준보조율 30% 적용
-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 지원예산 : ('18) 100,000천원 ('19~21) 86,000천원 / 국 50% 도 15% 시군 35%
 - 사업내용 :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나. 추계결과 : 2,730,000천원(도 840,000, 시군 1,890,000)

-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용역 : 1식 = 20,000천원
-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 10명×연2회×100천원 =연2,000천원
-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지원 : 1개소당 90,000천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지원 개소	30개소	2	4	6	8	10	
소요예산(천원)	2,700,000	180,000	360,000	540,000	720,000	900,000	

다. 재원 조달방안

-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용역 : 도비 100%
-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 도비 100%
-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지원 : 도비 30%, 시군비 7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202,000	362,000	542,000	722,000	902,000	2,730,000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용역		20,000	-	-	-	-	20,000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지원		180,000	360,000	540,000	720,000	900,000	2,700,000
재원 조달		202,000	362,000	542,000	722,000	902,000	2,730,000
자체 재원	소 계	76,000	110,000	164,000	218,000	272,000	840,000
	용역, 위원회 (도 100%)	22,000	2,000	2,000	2,000	2,000	30,000
	지원사업 (도 30%)	54,000	108,000	162,000	216,000	270,000	810,000
시. 군비(70%)		126,000	252,000	378,000	504,000	630,000	1,890,000